

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년 7월 22일
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7월 12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7월 13일

라. 상정일자: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7.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김건년 지역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천만원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근거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○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4조
- 2) 출연대상: 서울신용보증재단
- 3) 출연내용: 관내 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
(출연금의 12배수 한도 내에서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신용보증 지원)
- 4) 출연금액: 금90,000천원(보증한도: 10.8억원)
- 5) 출연시기: 2022년 7월

3. 참고사항

가. 보증규모(대출가능 금액) : 28억8천만원 ※ 보증재원의 12배

나. 보증재원(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) : 2억4천만원

-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: 90,000천원
- 신한은행 가양동지점 보증재원 추가출연: 150,000천원
※ 신한은행 보증재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출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허은옥)

-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「저신용 소상공인·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」 공모에 선정¹⁾되어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원된 국비 9천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

1) 전국 22개 자치단체 선정: 서울 강서, 강남, 동작 / 대구 북구, 달서구 / 인천 계양 / 광주 동구, 북구, 광산구 / 대전 서구 / 경기 여주 / 충남 당진 / 전북 익산 / 전남 광양, 여수, 해남 / 경북 상주, 영천, 경주, 영덕 / 경남 남해 / 제주특별자치도

- 우리구 「저신용 소상공인·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사업」은 신용점수 기준 595점까지 (舊 신용등급 7등급 수준)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 지원하는 사업으로 ※ 상환방법: 1년 거치, 4년 원리금 균등상환
- 강서구는 신한은행 가양지점과 협약을 통해 국비 9천만원, 신한은행 1억5천만원 총 2억4천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대출재원 총 28억 8천만원에(출연금의 12배) 대한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
-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관내(강서구 관내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) 약 140여개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자료에 따르면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대출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는 등 제도권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※ 저신용자 대출 실태 참조

< 저신용자 대출 실태 >

- '21. 3월 기준 '은행권 대출 중 신용 7~10등급자 비중 2.9%에 불과, '17년 이후 제도권 대출시장 내 신용 7~10등급 대출자 수 연평균 3.7% 지속 축소 ('21.6.,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)
- 제도권 대출거절로 불법사금융 이용한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최대 12만명 추산(서민금융연구원 '21.3.)
- 저축은행* 중 신용점수 600점 미만 저신용자 대출 미취급 ('21.6월)6개 → ('21.12월)12개 (저축은행중앙회, '22.2) * 가계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한 40개 저축은행

-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 중 특히 저신용자를 중점 지원하여 신용 회복을 촉진하고, 자활 의지가 높은 저신용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

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, 출연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

참고자료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 1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
 2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
 3.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 4. 금융기관의 저금리 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
- ②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-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구 저신용 소상공인·자영업자 특별신용 보증을 위한 출연은 상위법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며,
-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도권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으로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지역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참고

특별보증 지원개요

- ▶ 보증규모 : 28.8억원
 -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별도 사업진행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
 - ※ 저신용 소상공인 소액 금융지원 사업(전국 22개 자치단체 선정)
 - 보증한도 28.8억(보증재원 2.4억, 보증배수 12배, 한도소멸형)
 - 보증재원: 국비 9천만원, 신한은행 1.5억원 출연
- ▶ 보증한도 : 업체당 2천만원 이내
- ▶ 지원시기 : 8월(예정)
- ▶ 지원대상 :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강서구 소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
 - ※ 신용점수 최고점에서 ~ 최저 595점 까지 보증서 발급

- ▶ 지원방법 :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

▶ 지원절차



- ▶ 보증료율 : 용자금액의 0.8%
- ▶ 보증비율 : 용자금액의 100%
- ▶ 보증서 담보 대출 실행 후 1년간 무이자 용자지원 예정(총 1억 2천만원 예상)
 - ※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보전 사업비 활용(국비 지원 9천만원에 대한 50:50 비율 이상의 지방비 매칭 필요)
- ▶ 연도별 강서구 특별보증 지원현황

(단위: 건, 천원)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누적
건수	25	14	11	79	23	152
금액	794,750	527,250	426,500	3,127,000	995,000	5,870,500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²⁾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□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3. 기업의 출연금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□ 「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·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설립·운영하는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2) 제1호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제2호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
2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
3.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4. 금융기관의 저금리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

②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